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9
----------	-----

제출년월일 : 2021.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
- 나.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6조)
- 다. 의안에 대한 서면의결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1.04.02. ~ 21.04.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비규제 [기획실-4090(2021.03.25.)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실-4090(2021.03.25.)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요청 [가족복지과-13235(2021.03.26.)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요청 반영 [기획실-4265(2021.03.30.)호]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3명”을 “5명”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서면의결) 위원회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5명</u>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창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u><단서 신설></u></p> <p>1.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u>3명</u></p> <p>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p> <p>① ~ ④ (생략)</p> <p><u><신설></u></p>	<p>제2조(구성) ①----- ----- ----- ----- 7명----- ----- -----.</p> <p>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1. 판사·검사·변호사,----- ----- ----- -----</p> <p>5명</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p>

현행	개정안
<p><신설></p>	<p>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p> <p>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6조의2(서면의결) 위원회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p>

관계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④ (생략)

⑤ (생략)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실장 김명기
연락처	(033) 330 - 2065